

「구미시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조례 폐지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본 조례는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, 시민들의 법 질서 확립 등을 목적으로 제정·시행(2009.04.24.)함. 하지만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손괴자를 적발하고 손괴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조례 적용이 어려움. 현재 까지 포상금 지급 사례가 없는 것으로 보아 조례의 실효성이나 필요성이 매우 미미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「구미시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조례」의 폐지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해당없음
- 예산조치 : 신고포상금 예산 2,000천원 삭감 조치

5. 검토의견

○ 본 폐지조례안은

- 2009년 4월 제정된 「구미시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조례」를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2009년 4월, 주요 공공시설물을 손괴한 자를 신고한 자 및 손괴자 규명에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월 100만 원 이내, 원상회복 비용 10%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「구미시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조례」를 제정하였으나, 현실적으로 적용되기 어려워 현재까지 지급사례가 없음.
- 해당 조례가 적용되려면 공공시설물 손괴가 발생하고 손괴자 개인이 자비로 원상복구를 해야 하지만, 최근 2년간 해당 사례가 없으며, 유사한 조례가 있는 타 지자체에서도 대부분 지급사례가 없음.
- 현재까지 지급사례가 없고, 적용 가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200만 원의 신고포상금 예산을 수립하고 반납하고 있음. 이에 따라 행정의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해 해당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